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1
----------	-----

발의연월일 : 2024년 2월 1일

발 의 자 : 강수진, 고영옥, 권영애, 김육영,
소형준, 오중균,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현주,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및 소규모 구매와 배달이 늘어나면서 1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계획의 수립을 매년으로 규정(안 제4조)

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7조)

다.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4. 2. 2. ~ 2024. 2. 6.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시행”을 “매년 수립·시행”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실시할 수 있으며”를 “실시해야 하며”로,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체계적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u>수립·시행</u> 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 ----- ----- ----- <u>매년 수립·</u> <u>시행</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u>실시할 수 있으며</u> , 조사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u>공개</u> 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 ----- ----- <u>실시해야 하며</u> ,----- ----- <u>공개</u> <u>하여야 한다</u>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0조의2(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지원)</u>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